

[2024년 법제처 정책 돋보기]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다

-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각각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과제로 선정
- '24년 하반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10일,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 「공공데이터법」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

이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데이터(HWP, PDF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한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여 누구든지 쉽게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리걸테크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 우선적으로 7~8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3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법령해석 : 각 부처가 소관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의견을 말함(붙임1 참고)

이와 함께,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여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에는 먼저 3~4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약 50만 건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결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소관 행정심판기관들이 행하는 법적 판단(붙임2 참고)

이완규 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총 10곳의 행정위원회 결정문을 개방 중에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을,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각각 개방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이현승	(044-200-6788)

8. 선정지침

2023년 전기차충전기설치 계약의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여부

2023-01-09

1. 질의요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여부,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

2.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 등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 허 심 판 원
제 23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22원143
사 건 표 시 2020년 상표등록출원 제130314호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이승용
대전 
원 결 정 특허청 2021. 12. 7.자 거절결정
심 결 일 2023. 10.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2020년 상표등록출원 제130314호는 이를 등록한 것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20-130314호/2020. 7. 24.

(2) 표 장 : **명탐정 코난**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개인법률사건 관련 상담업, 거래표준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계약서작성 관련 법률지원업, 계약협상 관련 법률대행서비스업, 공인노무업, 공증업, 공탁업무대행업, 공증인업,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상의 사용자 신원확인용 도메인명의 등록업(법률서비스),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법률서비스), 노사관계 중재서비스업, 범죄예방 상담서비스업, 범죄수사를 위한 범죄과학적 자문업, 법 분야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률과 관련된 등록서비스업, 법률사건 관련 정보제공업, 법률사건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법률상담업, 법률서류준비업, 법률서비스 제공 주선업, 법률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업, 법률에 관한 자문서비스업, 법률자문 및 법무대리업, 법률자문목적의 지식재산권 감시업, 법률자문업, 법률자문을 산업재산권 모니터링업, 법률적 감시서비스업, 법률정보제공업, 법률정보조사서비스업, 법률조사업, 법무서비스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법적절차 중재업, 행정사업, 개인의 경력조사업, 귀중품 분실 또는 도난 후 복구 촉진용 귀중품 부착용 식별번호 할당업(보안업), 도난차량 위치확인 서비스업, 도난차량추적업, 도난품추적업, 동물학대 조사업, 미아위치추적업, 백그라운드 조사서비스 제공업, 분실/도난차량 관련 조사 관련 컴퓨터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제공업, 사설탐정서비스업, 사적인 조사에 관한 상담서비스업, 사전고용 배경조사서비스업, 실종자조사업, 실종자추적업, 탐정 서비스업, 탐정조사업

나. 원결정 이유 및 선등록상표

(1) 원결정 이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코난'과 아래 (2) 기재 타인의 선등록상표의 요부 'conan'은 그 칭호가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탐정서비스업, 탐정조사업, 개인법률사건 관련 상담